



# 국민권익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QUARTERLY MAGAZINE OF ACRC



상 상 으 로 보 인 다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28일 시행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합니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접대문화 NO, 각자 내기로!



청탁금지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2016 AUTUMN



04

### ACRC on

- 04 스페셜 1**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청탁금지법
- 08 스페셜 2**  
청탁금지법 Q&A
- 10 스페셜 3**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12 증인**  
국민권익위원회 들여다보기  
- Part 3. 부패방지국
- 16 사례 돋보기 1**  
채용비리 신고자 보호 결정 사례
- 18 사례 돋보기 2**  
이주대책대상자, 건물등기부등본 없어도 인정된 사례
- 20 현장 24시 1**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 22 현장 24시 2**  
충북 제천 이동신문고
- 24 현장 24시 3**  
전남 담양 현장조정회의
- 26 현장 귀 기울이기**  
경찰민원과의 고충민원 해결 이야기
- 28 민원 빅데이터**  
포장이사 이용 관련 민원 분석
- 30 ACRC 리포트**  
권익위, 아시아 옴부즈만 교류에 앞장서다



32

### THEME on

- 32 테마 칼럼**  
청탁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 34 독자 에세이**  
당신이 있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 36 선진국 가이드**  
영국 중대비리조사청



42

### CULTURE on

- 40 한입의 행복**  
김밥 한 줄, 추억까지 함께 말다
- 42 그곳에 가면**  
자연과 역사가 만나는 곳, 충북 제천
- 44 2016 트렌드**  
화학약품과의 이별 선언, 노케미족
- 46 생활법률상식**  
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 48 힐링 컬러링**  
나만의 가을 풍경을 만들어 주세요!
- 50 ACRC 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식
- 52 소통마당**  
독자의견과 퀴즈

스페셜 1

#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일입니다. 청탁금지법, 독자 여러분께서도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하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권익위에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 편집실



## 청탁금지법의 필요성 대두

청탁금지법은 2011년 6월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2012년 5월~2013년 7월까지 입법예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동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고 2016년 9월 28일, 드디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법 제1조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기존 우리 사회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오던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을 금지토록 하여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함께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여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과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는 ①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②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④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등이 있습니다.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등'으로서 청탁금지법 상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①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③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공무수행사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정청탁 금지란?

부정청탁 금지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요약하자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공직자들은 그 청탁내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에서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인가·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병역, 수사·재판·심판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가지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원법, 행정절차법 등의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른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 요구, 법정기한 내 직무 처리 요구, 법령·제도·절차 등 설명·해석 요구와 같은 국민과 공공기관이 의사소통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 금품등 수수 금지란?

이번엔 금품등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금품등'이란, ①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니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이나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그리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과 처벌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토록 하였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직자등과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부정청탁을 전달하는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그 외 일반인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 사회가 되길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농축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일부 업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거래비용을 높이는 접대,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높은 국가청렴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부정한 청탁과 접대가 감소하게 되면 보다 공정한 업무 수행 환경이 조성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신뢰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간 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확정된 이후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기업 등 각계에서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도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향후 면밀히 분석하여 법의 제도적 정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법의 취지와 정신에 모두가 공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은 더욱 동등하게 대우받고, 기업은 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스페셜 2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탁금지법 Q&A

청탁금지법 시행이 확정된 후 권익위에 많은 문의가 쇄도했다. 이 법이 조금씩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선별하여 정리해 보았다.

글·편집실



**Q1.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인가요?**

A.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적용받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Q2. 본인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Q3.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Q4.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1만 원이면 형사처벌, 99만 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A.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100만 원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100만 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Q5.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Q6.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자인가요, 아니면 정자인가요?**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Q7. 회사 내부 방침상 경조사 발생했을 경우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비 10만 원에 포함 되나요?**

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Q8. 공직자등에게 인·허가, 인사 등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공직자등이 들어주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Q9. 공직자에게 3만 원 이하의 식사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면 항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식사,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10.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이 되나요?**

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1. 고등학교 학생이 수학 담당 교사에게 전화해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수학 담당 교사에게 같은 말을 한 경우가 다른가요?**

A. 학생이 직접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한 것으로 학생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2. 직무 관련 공직자등을 포함한 3명이 9만 원 어치 식사를 한 경우, 그 비용에 음료수나 주류 비용도 포함되나요?**

A. 각자에게 소비된 식사비용의 산정이 어렵다면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3만 원이 수수한 금품등이며,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나 주류를 함께 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스페셜 3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부자들의 돈 모으기 제1 법칙은 바로 나도 모르게 새나가고 있는 자출을 막는 것이다.  
정부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눈속임으로 지원 받은 국고 보조금을 찾아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글·편집실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돕는 보조금 부정수급

전자·통신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 대표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14건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원받은 45억여 원의 정부출연금 중 20억여 원을 1,353회에 걸쳐 정부과제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을 자행했다.

또한 B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들을 정규 보육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아동의 시간 연장을 허위 등록하는 등으로 총 1억5천1백여 원의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시책을 장려하는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우리나라의 국고 보조금 예산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1,789개 사업에 대해 60.35조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급증하는 추세다. 따라서 드러나지 않은 재정 누수도 훨씬 더 막대하리라 짐작된다. 한 해 정부 예산 약 386.7조 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보조금 부정수급 잡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정부 보조금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013년 10월에 출범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조직으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담 조사 인력을 파견 받아 신고조사·처리를 수행한다. 현재까지 총 884건

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부정수급 적발액만 해도 941억 원에 달한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대상은 연구개발(R&D), 어린이 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농·축·임·수산업, 실업급여, 유가 보조금, 기타분야(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이다.

이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올바른 신고문화의 확산을 기대한다.

### 보조금 부정수급, 이렇게 신고하세요!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정부대표민원전화)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접수방법** :
1.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2.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3. 팩스 : (044)200-7972
  4.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5.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자 보상**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신고자 포상** : 부정수급 신고로 인해 공익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신고요령** :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 자료 제시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분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블로그기자단과 함께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들여다보기

## Part 3. 청렴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 선 부패방지국

무더위 기승이 끝나갈 무렵,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에 다녀왔습니다. 부패방지국의 여러 업무 중 청렴컨설팅, 부패신고, 공익신고, 청렴도 측정 업무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패방지국 속 이야기, 한 번 알아볼까요?

글 · 이중현(블로그기자단)



청렴컨설팅  
[청렴총괄과]  
전진모 사무관

가장 먼저 청렴총괄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청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Q 청렴총괄과 업무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청렴총괄과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및 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같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대해 연구하는 일도 우리 부서 일이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과 홍보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청렴총괄과가 우리나라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였군요! 청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청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렴컨설팅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청렴컨설팅은 청렴도가 낮은 공공기관의 업무와 제도, 행태 등을 분석해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청렴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최초로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도 9개 기관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렴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희망하는 경우 컨설팅 기법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청렴컨설팅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렴컨설팅이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청렴이라는 가치를 확산시켜,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렴총괄과에 이어 찾은 곳은 부패심사과였습니다. 부패심사과에서는 실제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업무를 하는 만큼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부패신고  
[부패심사과]  
강우성 사무관

**Q 부패심사과는 부패 방지를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권익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는 무엇인가요?**

**A** 부패심사과에서는 <권익위법> 2조 4호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아 그 신고가 법에 규정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하는 부패는 예산을 낭비하고 편취 또는 횡령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공직자가 공적인 행위를 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Q 이러한 부패행위가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A** 서울민원총합사무소로 처음 신고가 접수되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부패심사과로 사건이 배정됩니다. 조사관은 신고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여 그 사안이 금품 수수와 관련이 있거나, 감사기능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공무원의 업무 실수나 태만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으로 이첩하며, 조사 결과는 저희 권익위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됩니다.

부패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 행위를 척결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패방지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부패심사과를 응원하며 이어서 공익심사정체과를 방문했습니다.



66

청렴총괄과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및 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같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대해 연구하는 일도 우리 부서 일이죠.

99

66

부패심사과에서는 <권익위법> 2조 4호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아 그 신고가 법에 규정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9



66

공익심사정책과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운용하는 부서로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공익신고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99

공익신고  
[공익심사정책과]  
주경희 서기관

**Q 공익심사정책과의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공익심사정책과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운용하는 부서로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공익신고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저희 부서 조사관들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소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 송부하고 있으며, 조사, 수사결과가 미진한 경우에는 재조사, 재수사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Q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공익신고자 보호의 시작은 용기를 낸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권익위에서는 공익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사건을 심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의 위협을 받는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변보호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치료비나 이사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고, 보상금, 포상금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 공익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심사정책과의 업무추진계획이 궁금합니다.**

**A** 공익신고가 사회 전체를 위한 올바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익신고 보호에 대해 올바른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용기 있게 신고해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공익신고자들, 그들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공익심사정책과가 있기에 대한 민국의 미래는 오늘도 밝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조사평가과를 방문했습니다.



청렴도 측정  
[청렴조사평가과]  
박정희 사무관

**Q 청렴조사평가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청렴조사평가과는 공공기관의 현재 부패수준을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 각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정책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국민·전문가·기업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부패인식도 조사' 등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Q 청렴도란 무엇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청렴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청렴도는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청렴과 부패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대민·대기관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과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참여합니다.

**Q 청렴도 측정 결과는 실제로 공공기관을 구속하나요? 그리고 청렴도가 가지는 사회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A** 청렴도 측정 결과는 기관을 실제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설문에 참여하고, 기관별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과 국민간의 소통 창구로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패방지국 내 모든 부서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나눈 4개 과의 업무를 통해 부패방지국의 역할을 알게 됨으로써, 보다 청렴한 사회로 향해 가는 미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명가 에디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66

청렴조사평가과는 공공기관의 현재 부패수준을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 각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정책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국민·전문가·기업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부패인식도 조사' 등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99



사례 돋보기 1

**부정부패에 대한  
직무상의  
비밀 준수,  
우리에게 그러한  
의무는 없다!**

직무상의 비밀 준수와 정의를 위한 내부 신고. 둘 중 어느 쪽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 미묘한 일일까.  
비리 자료는 비밀 준수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련한 내부 신고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일임을 알려준 사례가 있어 살펴보았다.

글· 편집실



**직무상의 비밀 준수 vs 정의를 위한 내부 신고**

대전도시철도공사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3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에서부터 취업 장수생까지 난다 긴다 는 인재들이 입사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고 있었을 때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의 경영이사로 재직 중인 A씨는 공정해야만 하는 채용 절차에 어둠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장 B씨가 지인으로부터 청탁 받은 특정인 2명을 합격 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도록 총무인사팀장에게 지시하였고, 일부 면접위원들이 이에 가담한 것이다. 이때부터 A씨의 내적갈등이 시작되었다. 공사의 직원으로서 직무상의 비밀을 준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위해 신고를 해야 하는가. A씨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부정할 일을 저지른 회사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역 언론사에 제보하고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사의 감독기관인 대전시에 관련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대전지방경찰청에는 수사의 증거자료로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사 경영이사에서 해임된 것이다.

**비리 내부 신고, 마땅히 해야 할 일**

권익위는 A씨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보고, 공사 사장에게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직위인 경영이사로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내부 신고자 A씨의 경우처럼 조직 내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직후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자

로서 보호대상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A씨가 채용인사 비리 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본 공사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채용인사 비리 자료는 부패행위 증거자료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적용받는 직무상 비밀자료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A씨가 채용인사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면서 성실의무 위반을 해임 사유로 한 것에 대해, 권익위는 이를 정당한 해임사유로 보지 않고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 채용인사비리를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공사 간부 5명은 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여, 조직내부의 은밀한 인사 비리를 제보한 A씨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임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권익위의 조치로 결국 공사 사장 B씨는 구속기소, 점수조작에 가담한 공사 간부 5명과 외부 면접위원 1명 등은 불구속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권익위 결정에 따라 공사 사장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및 원상회복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공사 사장이 권익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고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가 날로 조직화, 은밀화,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권익위는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의 사후적 보호 조치 뿐만 아니라 신고 초기 단계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례 돋보기 2

이 주 대 책  
대 상 자,  
건 물 등 기 부  
등 본 만 이  
답 이 될 수는 없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주대책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주민공람공고일이다. 이때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일까?

글·편집실



아무리 등기가 늦었어도 실 거주만 6년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00년에 전세로 살던 주택과 부지를 구입한 후 토지만 등기하고 주택은 미등기상태인 채로 살다가 2006년에 주택을 등기하였다. 그렇게 거주하던 중 2005년, LH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공고하였고, A씨의 주택부지가 포함되게 되었다.

LH공사가 공고한 이주대책 안내문에 따르면,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는 주민공람공고일(2005년)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사람(사업시행일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A씨는 2014년에 이주대책을 신청하였으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2004년 12월) 이후에 주택을 등기하였으므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A씨는 난감했다. 엄연히 2000년에 구입을 하였고, 실 거주 기간만 해도 6년이다. 아무리 등기신청이 늦었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 때문에 그 어떠한 지원 대책 없이 이곳을 떠나기엔 앞으로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니와 억울한 마음도 컸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주택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 2015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실질적 처분권에 대한 다각도 조사

A씨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주택 및 부지를 매수한 부동산매매계

약서에는 'OO리 733-2, 733-32, 733-20 토지를 OO만 원에 매수하였고, 미등기건물 포함 및 매매대금은 미등기 건물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혀있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각도로 조사한 후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주택소유자란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A씨가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던 점, A씨가 제출한 토지계약서에 건물을 함께 구입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에 토지의 지번이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 등과 비교하여 보면 A씨가 매수한 주택이 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토지와 함께 주택을 구입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는 이 사건 사업의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해결한 이번 사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까지도 지켜주고 싶었던 권익위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



현장 24시 1

#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 우리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권익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선진 권익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글·편집실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 본선만큼 치열하고 뜨거웠던 예선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이 행정심판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경연대회 공고 이후 6월 1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6개 팀(189명)이 신청했다. 본선 진출 5개 팀을 선발하기 위한 예선은 서면심사로 진행되었다. 심사를 위한 경연과제는 참가 학생들이 다양한 행정심판 구제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사건(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노동사건(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사건(의사상자불인정처분 취소청구) 등 세 분야에서 선정했다. 각 팀에게는 이중 한 개 과제를 선택해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리·의결하는 과정을 요약·정리한 '심판개요서(필수)'와 팀별 가상 심리 모습을 담은 '심리동영상(선택)'을 제출토록 하였다.

예선 심사는 공정성을 위해 내부위원 4명(국장, 과장)과 외부위원 2명(교수, 변호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소속 학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비공개처리 하였다. 26개 팀의 실력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박빙이었다. 그중 본선에 진출할 5개 팀을 가려내는 작업은 더욱 어려웠다. 그 결과 예선 심사기간을 당초 7월 8일에서 15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였고, 본선 진출 팀의 수도 5개에서 8개로 늘리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오랜 숙고 끝에 이해력, 논리력, 해결력, 표현력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을 최종 확정하였다.

## 권익구제 행정심판의 미래, 믿음

8월 10일, 드디어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이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청사에서 열렸다. 본선은 각 팀에서 인용설 또는 기각설을 주장할 팀원을 4명씩 선정해 상대 팀과 논리 대결을 펼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연 과제도 사실관계, 법리 쟁점 등이 양설 논리 대결에 적합한 재결례인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2009년)'를 일부 각색해 구성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은 각각 기재공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용설 또는 기각설에 해당하는 법리를 내세우며 사업계획변경의 승인 또는 불승인 중 어떤 것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한 대결을 펼쳤다. 치열한 예선전을 통과한 팀들답게 이들이 펼치는 공방은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 이는 마치 실제 행정심판을 연상케 하였다. 치열한 공방 결과 대상인 권익위원장은 어진동505(서울대)팀에게 돌아갔고, 최우수상 중 대한변협회장상은 공세유데파(서울대)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상은 Law-ear(성균관대)팀, 법률신문사장상은 역전심판(전북대)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어진동505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행정심판 제도를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좋은 법조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균형 감각과 방향성, 즉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라고 규정하고, "이번 경연대회가 법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추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회의 취지와 의의를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미래 법조인력의 양성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입니다!

## 충북 제천 이동신문고 현장

모두가 2016 리우 하계올림픽의 뜨거운 열기를 즐기고 있을 그때, 권익위 이동신문고는 세계인의 축제 즐기기는 잠시 옆으로 미뤄두고 고충해결의 애타는 마음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에는 충북 제천이다.

글·편집실

충북 제천 이동신문고 현장



### ‘너’의 일이 아닌 ‘나’의 일처럼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오늘 이동신문고가 진행되는 제천 시청은 벌써부터 분주하다. ‘그 어떠한 민원이라도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권익위 담당자들은 전화선 하나까지도 꼼꼼히 점검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 온 주민들이 대기석을 채우기 시작했다.

상담이 시작됨을 알리자 대기하고 있던 주민들은 자신의 고충분야에 맞는 해당 데스크로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그 바쁜 걸음엔 절실함과 답답함이 있었을 터다. 한 민원인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은 따로 있는데 워낙 급경사라 노인들이나 어린이, 몸이 불편한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도 겨울이 되면 길이 얼어 피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한 길이 내토로길이다.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내토로길에서 명륜대로로 혹은 그 반대로 진입할 때 중앙선이 막고 있어 돌아 들어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 5m 정도 중앙선을 줄여달라는 것이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도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돌아가는 것이 번거로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진입을 시도하거든요. 이 때문에 사고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민원인의 준비는 철저했다. 하얀 종이에 직접 약도까지 그려와 권익위 상담 담당자에게 설명을 했다. 담당자는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몇 가지 내용을 재차 확인하더니 바로 수화기를 들고 시청의 관할 부서와 통화를 시도한다.



민원인이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도로교통과에 말해 두었습니다. 바로 가보세요. 거기서 잘 해결 해주실 겁니다.”

이 민원인에게 부서 담당자 면담은 민원 해결을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민원인은 말한다.

### 국민들을 찾아가는 이유

시간이 흐를수록 민원인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했다. 한 민원인은 통장분실로 인하여 자신이 은행과 거래하고 있음을 증명할 길이 없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자신의 과수원 바로 근처에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어 권리 행사에 제한이 크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권익위의 한 담당자는 “민원인들 중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없어요. 답답함을 알릴 수 있는 창구조차 없고, 있다 하더라도 알지 못해 혼자만 앓고 있다 여기로 찾아오세요. 민원이 다양하다보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담당 부서로 연결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천 이동신문고에서도 한의진료소가 개설되었다. 민원인 대개가 고령층이고, 사는 것에 바빠 자신의 몸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터라 반응이 좋았다. 권익위 이동신문고 상담으로 마음은 가볍게, 한의사의 진료로 몸은 가뭏하게 돌아가는 민원인들을 보니 이것이 바로 권익위가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국민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동신문고 한의진료소 운영

#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 담양-광주 간 시외버스 노선 변경 현장 조정

지난 7월 20일, 담양·광주 주민들의 오랜 불편함이 해결된 날이다. 그간의 힘든 일들이 서로의 이해와 협의로 마무리되면서 보다 편리해진 버스 노선 개실이 결정된 '행복출발'의 날이었다.

글·편집실



### 시간낭비 없는 편리한 노선 개실을 요청합니다

담양군과 광주 첨단지구는 차로 30~40분 거리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두 지역을 이동하려면 준비 시간까지 합쳐 3시간도 빠듯했다. 집에서 떠날 준비를 하는 시간까지 1시간이면 넉넉한 거리를 3시간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속사정을 모르고 했던 짧은 생각이다. 두 지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들은 담양에서 출발하면 광주터미널까지 간 다음 첨단지구행 버스로 갈아타야 해서 2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주민들의 호소를 익히 알고 있었던 지역 버스회사인 동광고속(주)가 나서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노선변경)을 요청했지만 광주광역시 측은 재정지원금 부담 및 유사 민원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국토교통부 측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었다. 이에 동광고속(주)는 지난 1월 권익위 주관 담양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고충 해결을 건의하였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드디어 지난 7월 20일 담양군청에서 김갑섭 전라남도부지사, 박남주 광주광역시 건설교통국장, 최형식 담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린 기관 간 협업의 성과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조정회의에 앞서 그간의 추진과정과 민원 현장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담양 지역 주민들은 광주 첨단지구가 조성되면서 직장 및 학교 진학 등의 사유로 첨단지구로 이사를 한 경우가 많아 두 지역을 오가는 통행이 잦은 편이었다. 이처럼 자세한 속사정을 듣고 나니 주민들의 불편함이 더욱 피부로 느껴졌다.



브리핑 후 조정안에 대한 이의 여부 확인이 이어진 뒤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권익위 중재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동광고속(주)가 운영하는 담양터미널에서 광주터미널 간 시외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광주 첨단지구를 경유하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광주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내 환승터미널이 건립되면 담양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직통 노선이 개설되도록 제안했고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전라남도지사가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위해 광주광역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광주광역시장은 이

에 적극 응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협의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신청인에게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해주기로 했다. 또한 담양군수는 승하차 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표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광주광역시장은 이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성영훈 위원장은 “오늘 조정은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수년간 해결되지 못한 담양 및 광주 첨단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영훈 위원장의 마무리 말을 끝으로 회의는 종결되었다.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던 주민들은 체증이 한꺼번에 가신 듯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함이 없는 직통노선을 달릴 버스가 출발할 첫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 권익위의 다음 현장조정회의는 어느 지역 주민을 찾아갈까. 기대된다.



# 작은 공감의 만들어 가는 큰 희망

## 경찰민원과의 고충민원 해결 이야기

“공공기관의 지역본부에서 일하면서 두 아이를 기르는 워킹맘입니다. 태어난 지 11개월 된 작은 아이가 선천성 심장기형이라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 서울 도봉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에 인사고충을 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민원을 신청하니 제발 서울 도봉지역에서 근무하며 아이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글 · 경찰민원과 박숙경 조사관 정리 · 편집실



### 조사관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호소

12월 연말쯤이었다. 연중 매일 접수되는 민원업무임에도 연말분 위기를 내볼 겸 여유를 찾아보려하던 중 배정된 민원이다. 민원 내용을 읽는 순간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 제1항에 해당되어 이송할 민원이며, 가급적 배당 당일

이송처리해야 한다'는 프로세스가 단번에 스캔되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43조 1항에 '행정기관 등의 직원의 인사행정사항은 각하하거나, 해당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파란색 민원표지에 '이송계획'이라고 적었지만, 11개월 된 작은 아이가 난치병을 앓고 있다는 말이 계속 맴돌아 인터넷

에서 '선천성 심장기형'의 질병에 대해 찾아보았다. '선천성 심장기형'은 태아기 3주에서 8주 사이에 심장형성 및 발달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심장기형 및 기능장애로 숨을 가쁘게 쉬거나, 잘 먹지 못하여 체중이 늘지 않고, 성장이 잘 되지 않으며,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심장 전문의에 의한 개별적 맞춤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는 질병이었다.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곧바로 이송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 일단 민원인과 통화를 해보기로 했다. 권익위 조사관이라고 하자 민원인은 울음부터 터트렸다. 우선 민원인이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얼마간의 시간을 준 뒤에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원인은 해당기관에 인사고충을 냈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아이가 서울에서 치료받을 경우 서울에 계시는 친정 부모가 간병하고, 민원인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미 인사고충을 냈었다고 하니 해당기관으로 이송해도 처리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민원인에게는 일단 알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민원접근방식에 대해 고민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는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 처리한다고 해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기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어 다른 민원과 똑같이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조사관이지만, 조사관이 아닌 '민원인의 사정을 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

우선 공식적인 형식은 갖추는 것이 상호간 오해가 없을 것 같아 민원이 제기된 사실과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해당기관에 발송하고, 담당자의 전화를 기다렸다. 얼마 뒤 담당자로부터 불만 어투의 전화가 걸려왔다. 조사관은 이 민원의 경우 부패방지권의 위법상 이송하거나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이송하거나 각하하는 것이 옳을 수 있으나 11개월 된 딸의 질병을 오랫동안 치료하고 간병해야 하는 민원인의 사정이 워낙 안타깝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인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

다는 취지로 솔직한 마음을 호소했다. 그리고 나는 고충민원 조사관이지만, 민원인을 이해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때서야 담당자는 한층 누그러진 태도로 현재 접수된 인사고충만 해도 81건이고, 그 대다수가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육아, 학업 등 나름대로의 절박한 사정으로 인사고충을 내어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서 특별히 우대하여 특정근무처로 발령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 번에 민원이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사고충에도 고충내용이나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적 고려대상이 있을 것이니 다시 검토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고 전화를 끊었다. 담당자의 말대로 다른 직원들의 인사고충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만 특정 근무처로의 발령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민원인과 다시 통화하여 해당기관 담당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근무 가능한 범위를 넓혀보자고 제안하였고, 논의 끝에 근무가능한 범위를 서울 전역과 의정부 지역으로 넓혔다. 담당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자 그동안 담당자도 고민을 했었는지 자녀질병은 인사고충에서도 우선대상이 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담당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얼마 후 민원인은 서울 강남지역 근무처로 발령을 받았다. 작은 아이는 서울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은 우리 위원회로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권익위 인트라넷에 올라온 감사편지를 본 내부직원들, 특히 자녀가 있는 직원들로부터 격려가 쏟아졌다.

###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조사관들...

대다수의 조사관들이 이송 내지 각하사항이라고 해서 곧바로 이송, 각하로 종결하지는 않는다. 자신들의 고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민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사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인을 만나고 민원처리방향을 정한다. 이송·각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조사관들은 어떻게든 돕고 싶어 한다. 민원인은 감사편지를 통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나 역시 이런 조사관들 중 한 명이어서 기쁘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 아주 고마운 민원이었다.

# 국민의 재산 보호와 이사 불편 최소화를 위한 포장이사 이용 관련 민원 분석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사하기에도 좋은 계절이 되었다. 새 보금자리를 향해 떠나는 설렘도 잠깐, 이사 서비스 후 소비자 불만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이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이사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을 분석하였다.

글·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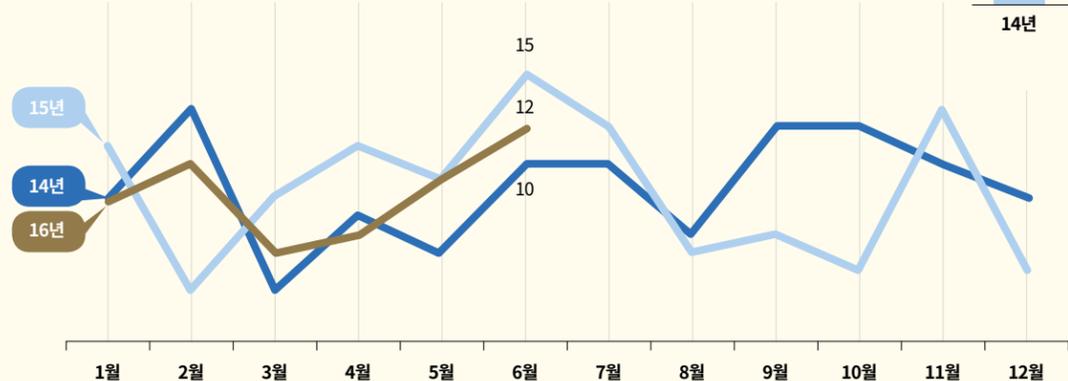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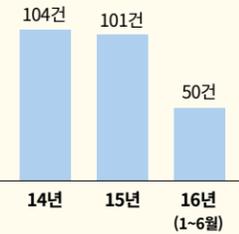
### 연도 및 월별 추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민원은 총 255건으로, 연도별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시기별로 증감이 있으나 특히 6월에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사 성수기인 5월에 포장이사 후, 물품 파손·분실 등의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이 더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별 발생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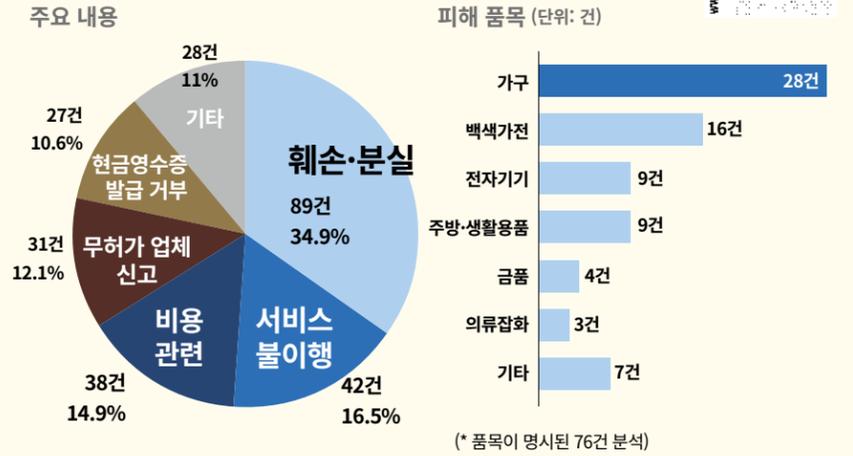
연도별 발생 추이



## #2

### 가구 훼손·분실 사례가 가장 많아

민원 내용으로는 훼손·분실이 3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불이행, 비용 관련, 무허가 업체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훼손·분실 피해 품목 중 가구가 36.8%(2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색가전, 컴퓨터 등 전자기기, 주방·생활용품, 금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품목이 명시된 76건 분석)

### 사례1

**포장이사 후 이삿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보관상태 불량으로 물품이 심각하게 훼손**

나름 이름있는 이사업체에 포장이사를 맡긴 후 보관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삿짐 인계 후 이삿짐을 확인해 보니, 고가의 소파와 탁자에 심각한 오염이 있었고, TV를 켜보니 액정부분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화면이 뿌옇게 나오는 등 물품들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사업체에 전달하여 보상을 요구하니 자기를 과실이 아니라며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너무 화가 납니다.

### 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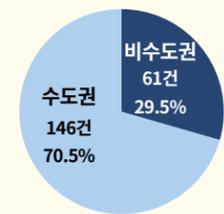
**작업 인력도 1명 부족한 상태에서 약속했던 청소와 정리 정돈 미실시**

방문견적을 통해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이사 당일 작업 인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 책임자에게 전화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았고, 작업자는 전달받은 게 없다며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약속했던 골판지 포장뿐 아니라 이사 후 정리정돈·청소도 해주지 않고 이사를 마무리했습니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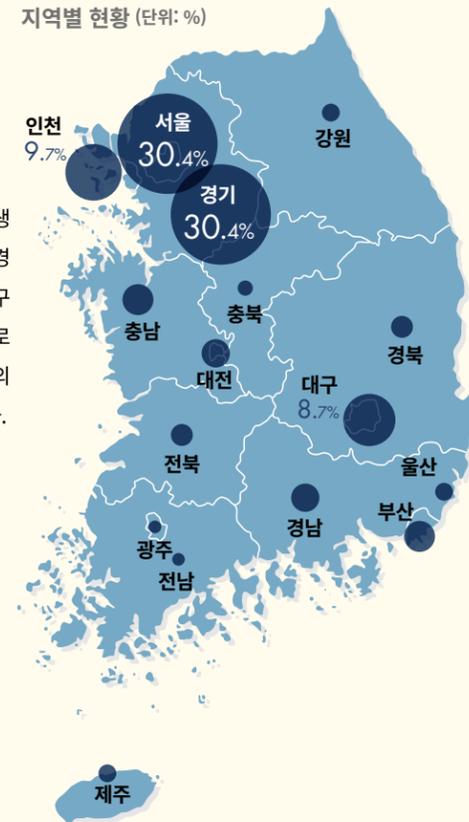
### 지역별 현황

포장이사에 대한 지역별 민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30.4%), 경기(30.4%), 인천(9.7%), 대구(8.7%), 충남(3.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이 전체의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거주지가 명시된 207건 분석)

지역별 현황 (단위: %)



## #4

### 이사짐

전반적 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계약서 상 기재된 서비스 사항 불이행 시, 계약금의 일정액을 반환 해주는 등의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권익위, 아시아 옴부즈만 교류에 앞장서다

##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회의 참석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 간 국제협력에 도모하는 비영리 국제조직 세계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는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과 옴부즈만 제도 연구 및 발전을 장려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한 지역 옴부즈만의 참여를 증진하여 민주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78년 설립되어 111개국의 민원처리기관장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 협의체이다. 권익위 위원장은 199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입 이래로 지역이사직을 역임 중에 있다. 글·편진실



###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 확대를 위한 논의

권익위는 IOI 아시아 지역 규칙 개정의 주요 의제를 논의·결정하고 오는 11월에 있을 지역이사 선출을 대비해 각국 옴부즈만과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지난 8월 10일 타타르스탄 카잔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 외 파키스탄 연방 옴부즈만(의장), 태국 옴부즈만, 일본 옴부즈만,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이란 감찰원, 스리랑카 옴부즈만, 파키스탄 신드지방 옴부즈만, 파키스탄 발로키스탄 지방 옴부즈만, 파키스탄 연방 조세 옴부즈만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2014년 서울에서 열린 IOI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권익위가 제안한 지역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IOI 아시아 지역 규칙을 IOI 규칙에 맞추도록 하였으며, 지역회장 소속기관이 IOI 지역사무국 역할을 하는 것을 지역규칙에 명시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의장이 오는 11월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이사수 확대' 등 주요 안건 검토시 아시아 회원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방식을 이원화하는 것을 제안하여 회원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IOI 활동 적극 참여, 아시아 지역 회원 확대, 아시아 지역 이사의 최소 연 2회 모임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IOI 회장 직위 순번제 제안, 아시아옴부즈만협회인 AOA와 IOI 간 협력 MOU 체결 관련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정책 컨퍼런스 발표 및 재외국민 권익 보호방안 마련

한편, 이번 아시아 지역회의에서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민권익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는 정책 컨퍼런스도 열렸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타타르스탄 옴부즈만, 파키스탄 연방 옴부즈만, 홍콩 옴부즈만, 일본 옴부즈만 대표 참석자들은 각 국가의 정보기술 활용 사례, IT 기반 정책,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권익위의 김익환 고충처리국장은 온라인 통합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의 도입배경과 주요기능 및 성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이란의 감찰원 등 다수 회원이 국민신문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로써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권익위의 우수한 제도·기술에 대한 각국의 벤치마킹 수요가 확대 될 것을 예상하게 하였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벤치마킹을 원하는 국가들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국 여건 분석을 반영한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 대표단은 주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재외국민 민원처리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양측은 재외국민 민원 처리의 효율성·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여 앞으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로써 재외국민의 고충까지 안고 갈 수 있는 권익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권익위, 옴부즈만 활동 교류에 박차

앞으로 권익위는 IOI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참여 중인 국제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아시아 옴부즈만 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실효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며 선진 옴부즈만과의 정책교류를 위한 양자 협력 채널도 확대해 나가려고한다. 그 일환으로 민원조사 및 처리에 있어 우수한 정책과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 주 옴부즈만, 덴마크 옴부즈만 등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IOI 아시아 지역회의



정책 컨퍼런스-국민신문고 발표

#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향후 과제

글 · 윤대범(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는 제법 긴 명칭의 법률이 시행되었다. 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난 2011년 정도이니 대략 6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정부 내에서의 논의, 시민사회의 논란, 국회에서의 입법화 과정 등 실로 다양한 우여곡절 끝에 입법화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하였던 법안과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최종 입법화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지만,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환기적인 법의 제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부정부패 사건들의 이면에서는 필수적으로 부정청탁,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 잘못된 구제도 벗어날 기회 열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소위 생활양식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르기 보다는 대개 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편법을 생각한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하면 손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를 큰 힘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을까? 사람 사는 세상이라 어려우면 부탁도 하고, 쉬운 문제 해결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편익이 규범과 절차를 따름으로서 얻게 되는 편익을 크게 초과하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지나치게 과도한 지대의 추구(RENT-SEEKING)는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잘못된 부탁 혹은 청탁이 우선시되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온갖 연줄(학연, 지연, 혈연 등)로 연결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연줄을 확인하고자 하고, 작은 연줄이라도 확인이 되면 바로 동료관계를 형성한다. 혹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동아줄을 만들려고 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들 간에 나누었던 한 잔의 커피는 어느 새 한 잔의 술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 우정 아닌 우정, 빛나간 우정으로 확장되어 버렸다.

선물은 또 어떤가? 수많은 선물들이 오고갔지만, 이 중에서 과연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고받은 선물은 얼마나 될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거기에는 기댓값이 포함되어 있다. 애당초 선물에는 사실 뇌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선물을 받은 당사자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선물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물론 예의상 주고받는 작은 가격의 선물들도 있을 것이다. 누구를 만나거나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다. 적은 식사비용은 서로 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당사자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전에 주고 받았던 선물이 아님을.

승진이나 취임 등 경사 때 방안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값비싼 난(蘭)의 행렬들. 상가 집 앞에 호위병처럼 도열하여 위세를 자랑하는 수많은 장식용 꽃들. 이 속에는 순수한 축하와 위로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독이 될 수밖에 없는 다른 뜻들이 숨어있기도 하다.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을까? 이유는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썩 정의롭지 않다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오히려 법과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롭지 못함을 알면서도 그 정글 속에 또 다른 편법으로 뛰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 사회 아니었던가.

청탁금지법은 이와 같은 우리가 익숙해 있었던, 그러나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오랜 관습, 구제도(ANCIENT REGIME)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다. 새로운 사고, 생활양식의 도입이다.

## 여전히 남은 숙제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다고 이런 문제들이 바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 법 자체의 모호성도 일부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문화적 관성이다. 우리의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정말로 오랜 세월동안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덮을 수도, 걷어낼 수도 없는 것들이다. 또 다른 형태의 왜곡된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법의 시행은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정말 중요한 본 게임은 그 이후부터이다.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힘든 일들이 남아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 개인은 물론 기관 차원에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제거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수년에 걸친 논란 끝에 만들어진 이 소중한 법이 후대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법이 되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

# 당신이 있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 존경하는 조사관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우리 주변에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독자 편지의 주인공도 이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권익위의 도움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편지는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박근용 조사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 국민권익의 독자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용 조사관님께

안녕하세요.

늘 약자의 편에 서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박근용 조사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구청에서 과태료 통지서(금 33,876,000원 정도)를 받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막막해서 구청에 울면서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주변 분들께 자문을 구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사정 이야기를 드렸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박근용 조사관님께서는 당사자인 저보다도 더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셨습니다. 결국 착오로 인한 누락신고임을 증명해주셔서 과태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저의 입장이고, 상대방은 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뿐더러 당시 제가 처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해 아이를 4명 낳아 기르면서 사회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이런 일이 겪게 되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박근용 조사관님의 적극적인 대처와 따뜻한 격려가 정말 힘이 되었고, 조사관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과태료를 빚을 내서 납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테지요. 각박한 사회를 살면서 이처럼 고마운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박근용 조사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감사의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으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 하셔서 이렇게 편지로나마 제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드림



## 영국 경제를 흔드는 검은 손을 쫓다

# 영국 중대비리조사청

'신사의 나라'라 불리고 있는 영국. 하지만 그 겉돌하던 신사도 부정부패, 비리 앞에서는 한겨울에 몰아치는 눈보라보다도 더 차갑게 돌변한다. 이런 영국을 청렴한 국가로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중대비리조사청이다. 부정부패 감시의 눈을 피해 비리 행위를 저지르는 기관·기업 처벌에 있어 중대비리조사청 사전엔 자비란 단어는 없다.

글·편집실



### 청렴에 대한 공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세계부패인식지수에서 10위를 차지한 영국. 2013년 17위, 2014년 14위에서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이는 영국이 청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영국이 처음부터 청렴인식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했던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뛰는 정부 시스템 한수 위로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한 비리 수법이 영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었다. 이에 영국 국민들은 중대한 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의 정부 차원 수사와 시스템에 대해 불신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제범죄 사건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Lord Roskill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독립조사위원회에서 '형사법과 소송절차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198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 발간된 일명 'Roskill Report'라고 알려진 '사기 사건처리위원회 보고서(Fraud Trials Committee Report)'가 1987년의 형사법 개정과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출범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중대비리조사청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이외에도 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중대한 경제범죄 사건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새로운 통일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1987년에 개정된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 1987)에 의하여 1988년 4월 중대비리조사청이 설립되었다.

### 경제 투명성을 실현시키다

중대비리조사청은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운영되는 독립 기관으로,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 맨섬, 채널제도 제외)에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 등 경제범죄사건을 조사·기소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기관은 약 3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전문분야의 변호사, 회계전문가, 경찰공무원 및 IT전문가 등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사를 위해 고객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은행, 금융기관, 회계사 등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중대비리조사청은 영국의 '재계와 금융업계'의 투명성 유지를 목적으로, 경찰, 정부기관, 규제기관, 영국 은행 및 언론 등으로부터 이첩·신고된 사건이 중대비리조사청의 조사기준에 부합하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중대하거나 복잡한 성질의 경제범죄사건, 대중의 관심이 크고 여러 나라에 걸쳐서 발생한 사기사건, 고도로 전문화된 시장 또는 상업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 손해액이 100만 파운드 이상인 사건 등이다.

중대비리조사청의 최근 활동 사례라 하면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사 조사 착수를 들 수 있겠다. 에어버스 사는 제3자 컨설턴트를 이용해 여객기 제조 계약을 따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버스 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던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에어버스가 해외 에이전트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왔는지 제보를 받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시 에어버스 사는 영국 수출금융기관에 신용을 신청할 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으며, 수출금융기관은 이 사실을 중대비리조사청에 알리고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SFO

serious  
fraud  
office



**SFO** Serious  
Fraud  
Office

# United Kingdom

## 뇌물방지법, 중대비리조사청을 움직이는 힘

중대비리조사청을 이야기 할 때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되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이라 평가받는 이 법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보다 그 적용범위가 훨씬 포괄적이고 처벌수위도 높다.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 미국 내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데 비해,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법을 위반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중대비리조사청이 수사한다.

뇌물방지법의 가장 획기적인 조항은 기업이 직원, 대리인, 자회사 등 관계자의 뇌물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뇌물 제공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또한, 기업들의 뇌물 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충분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뇌물 위험도에 비례하는 뇌물방지절차 수립, 최고경영진의 실천의지 표명, 뇌물 위험도의 평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조치의 시행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BS 10500시스템이 있다. 이는 조직이 뇌물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경영시스템 요건들을 규정한 영국국가표준으로,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66

중대비리조사청의 최근 활동 사례라 하면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사 조사 착수를 들 수 있겠다. 에어버스 사는 제3자 컨설턴트를 이용해 여객기 제조 계약을 따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버스 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던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에어버스가 해외 에이전트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왔는지 제보를 받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99

개선(Act)에 이르는 PDCA 모델을 따라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이 실행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조직이 BS 10500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적절하게 실행할 경우, 이는 뇌물방지법에서 언급한 적절한 뇌물 예방 절차가 실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로서 의의를 가진다.

## 뇌물 수수처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뇌물방지법은 처벌 수위도 강력하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업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벌금이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영국의 뇌물방지법 위반 시에는 개인과 법인에게 10년 이하의 징역과 상한선 없는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영국의 강력한 의지라 할 수 있겠다.

영국의 유명한 법률가이자 저술가인 토머스 모어는 주옥같은 명언을 남겼다.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에 애쓰는 것보다 몇 천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쓴다. 그러나 진정 소중한 것은 자신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청렴결백한 마음이지, 내 옆에 있는 물건이 아니다.”

청렴은 공직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들도 절대 예외가 되지 않을뿐더러 모두가 지켜야 할 덕목일 것이다. 윤리가 바로 선 국가를 위해 중대비리조사청을 설립하고 뇌물방지법을 시행하는 영국은 청렴의 가치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신사다.

# 둘둘 만 김밥 한 줄, 그때 그 시절의 추억까지 함께 말다

## 김밥

가을이 오긴 했나보다. 가을소풍, 가을운동회, 가을단풍놀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요즘에는 도시락이 번거로워 여행지 근처 식당에서 사먹거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도시락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맘때는 역시 김밥이다.

참고자료 • <음식이 상식이다 / 더난출판사>



김밥이 유행하고 있는 것일까.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분식집에나 가야 먹을 수 있던 김밥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품으로 출시되어 주거단지 상가마다 매장이 하나씩은 들어서 있다. 또 편의점에는 어떠한가. 못해도 대여섯 가지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 진열되어 있어 입맛 따라 골라 먹기만 하면 된다. 가격까지 부담스럽지 않아 한 끼 급하게 때워야 하는 바쁜 직장인이나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음식이다. 이처럼 지갑만 들고 나가면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소풍날이나 되어야 겨우 먹을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 바늘 가는 길에 실이 늘 함께 하는 것처럼 소풍 가는 날 점심은 언제나 김밥이었다. 소풍에 최적화된 음식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들고 가기 편하고 맛도 좋다. 요즘에야 소고기김밥, 돈까스김밥, 참치샐러드김밥 등 다양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김밥에 호사를 부려 봤자 거기서 거기였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음식

이었다. 매일 점심 도시락을 먹던 교실이 아닌 야외에서 친구들과 돛자리 깔고 앉아 이야기하며 먹으니 어느덧 김밥은 그저 하나의 음식이 아닌 추억까지 담은 맛을 담게 되었다. 소풍과 단짠을 이루는 김밥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김밥에 대한 이러한 설이 있다. 일본의 어느 노름꾼이 하루 종일 노름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팠다. 하지만 돈을 잃은 노름꾼은 돈을 다시 따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김 위에 밥을 얹은 후 다량어와 호박 등을 넣고 말아먹었다. 맛도 맛있지만 손에 밥풀이 붙지 않아 계속 노름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발전되어 지금의 김밥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김초밥'이지 우리가 말하는 '김밥'은 아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맨밥'과 '초밥'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밥은 일본에서 들어온 김초밥이 변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김은 한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식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김밥이 일본에서 건너온 음식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삼국유사>에 신라에서 김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 초기 발간된 <경상 지리지>에 경남 하동지방의 토산품 '해의(김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우리 문헌에 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김을 먹으면서 김밥(오늘날과 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을 먹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사실 김밥의 원조가 어느 나라인지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김밥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이고 우리의 기억 저편에 자리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니까 말이다. 떠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이 가을에 자리를 내어주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분다. 단풍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별 좋은 어느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김밥 싸들고 가까운 공원에라도 나가 소풍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만의 가을 이야기가 또 한 페이지 채워질 것이다.

### 남은 김밥의 변신! 김밥전 만들기

김밥을 맛있게 먹고 난 후, 남은 경우가 종종 있다. 상할까봐 냉장고 안에 보관하지만 다시 먹으려고 할 때 난감하다. 이미 차갑게 식어 딱딱해진 김밥을 먹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김밥전을 만들어보자. 계란옷을 입혀 노릇노릇 구운 김밥전은 김밥의 또 다른 맛을 만들어낸다.

#### 재료(2줄 기준)

남은 김밥, 계란 1개(남은 김밥에 따라 개수 조절), 식용유

#### 조리과정

1. 오목한 그릇에 계란을 풀어준다. 김밥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란에 소금을 넣을 필요가 없다.
2. 잘 풀어준 계란물에 김밥을 넣는다. 너무 오래 넣어두면 김밥이 다 풀어질 수 있으니 계란물을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바로 건져주는 것이 좋다.
3. 기름을 둘러 달군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부쳐준다.



# 자연과 역사가 만나는 곳 제천의 가을 속으로

## 충청북도 제천

여름 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천시청에서 지역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공공행정 분야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찾은 제천은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곳으로서 청풍호가 흐르는 호반의 도시로 유명하다. 특히 가을이면 낭만적인 분위기가 물씬해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청풍문화재단지와 의림지를 소개한다.

글+사진 · 임운석(여행작가)



01

01 청풍호반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청풍문화재단지

### 호수 위 작은 민속촌, 청풍문화재단지

남한강 상류에 자리한 청풍은 선사시대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삼국시대에는 화려한 중원문화를 꽃피웠던 곳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물길을 이용한 상업과 문물교류가 크게 발달했다. 1978년에 시작된 충주다목적댐 건설로 인해 청풍면의 유서 깊은 마을 61개가 수몰될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곳곳에 산재했던 문화재를 한 곳에 모아 청풍면에 문화재 단지를 조성하기에 이른다. 단지 내에는 보물을 비롯한 53점의 문화재와 유물전시관, 수물역사관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실향의 아픔은 생겼지만 각종 문화재가 모인 덕분에 탐방객들은 수월하게 한자리에서 많은 문화재를 관

람하게 되었다. 또한 청풍호반을 끼고 비봉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가을이면 울긋불긋 단풍이 유난히 곱다. 호수에 비친 산그림자가 한 폭의 그림과 다름없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입구로 들어서면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쉽게 갈 수 있도록 동선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를 보며 문화재를 하나씩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조선시대 청풍부를 드나들던 관문, 팔영루가 제일 먼저 탐방객을 반긴다.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이 곳은 고종 때 부사 민치상이 청풍명월의 8경을 시제로 한 팔영시 덕에 팔영루라 불린다. 이후 연자방아를 지나면 수물현장에서 옮겨온 옛 고택들이 차례로 자리하고 있다. 아래로 내려와 유물전시관과 수물역사관을 둘러봐도 되지만 풍광이 좋은 곳은 좀 더 언덕 위에 있다. 금병현과 응청각 한벽루가 나란히 서 있는 곳이 청풍문화재단지의 중심부이다. 청풍부의 동헌으로 쓰였던 금병현 앞에는 죄인을 심문하는 형틀과 포졸, 진사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한번쯤 기념사진을 찍고 가는 곳이다. 바로 옆 한벽루는 보물 제 528호로 지정된 곳으로 관아에서 세운 독특한 양식의 부속목조건물이다. 현판 글씨는 우암 송시열의 친필로 전해진다.

응청각을 지나 망월산성의 망월루 가는 길은 경사가 다소 가파르다. 하지만 이곳이 가장 조망이 좋은 포인트이다. 거기에 연리지, S라인 빛나무, 희망소나무, 하트 품은 소나무 등 재미난 나무들이 많아 심심치 않게 오를 수 있다. 망월루에 서게 되면 옥빛으로 빛나는 청풍호수를 가슴 가득 담아 볼 수 있다. 하얀 포말을 가르며 지나가는 유람선이 호수 위에 한 획을 긋고 청풍대교가 든든하게 배경이 된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 무렵, 청풍문화재 단지는 원래 그곳에 있던 터줏대감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로써 자연과 역사가 만난 청풍의 가을은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는다.

###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 곳, 의림지

신라 진흥왕때 우륵이 처음 쌓았다고 전해지는 의림지는 제천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처다. 전북 김제 벽골제, 경남 밀양수산제, 경북 상주 공검지 등 고대 저수지 가운데 유일한 관개 저수지이며 현재까지도 농경수로 사용하고 있다. 제천 10경 중 제 1경에 손꼽히는 의림지는 2km 달하는 둘레길을 따라 버드나무, 전나무, 빛나무, 은행나무들이 정자와 함께 어우러져 서정적인 풍광을 자아낸다. 특히 수면위로 비친 나무 군락들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 가을에는 고운 단풍의 향연이, 겨울에는 설원의 풍경이 호수와 하나가 되어, 산책하고 있노라면 거대한 화폭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 정도이다. 빼놓지 말고 챙겨봐야 할 곳은 건립된 지 60년이 넘는 멋스러운 경호루이다. 이곳은 수백 년 된 소나무 숲과 어우러져 상쾌한 솔내음이 가득하다. 의림지 한복판에 서있는 외로운 섬은 의림지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명소이다. 고요한 저수지와 작은 섬이 기막힌 앙상블을 이룬다. 그 외에도 의림지의 명물은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순채다. 한때 이곳에 서식했으나 1972년 수해가 나면서 순채 서식지가 훼손되었다. 또한 의림지에서 자라는 빙어는 다른 곳보다 맑고 투명해서 '공어'라고 불린다. 자연과 역사가 하나로 어우러진 의림지에서 무르익은 가을을 마음껏 만끽해 보자.



02



03



04



05

02 관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청풍문화재단지  
03 국회의 그윽한 향에 취해 산책할 수 있는 청풍문화재단지  
04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묻어 있는 청풍문화재단지의 문  
05 의림지 산책로는 40분 안팎이면 쉽게 걸어볼 수 있다



## 우리 이만 헤어져! 화학약품과의 이별 선언, 노케미(No-chemi)족

우리의 몸은 대자연에서 왔는데, 우리 생활은 인공으로 만든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조금 더 편하게'를 외치면서 사용하던 화학물질이 어느 순간 역습하였다. 그래서 화학물질과 이별을 선언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노케미족이다.

글·편집실

### 나와 내 가족은 소중한니까

하루 동안 보통 200여 종의 화학물질에 노출된다고 한다. 치약, 샴푸, 화장품 등 한 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만 해도 약 30여 종 이상. 기습기 살균제 등 화학물질과 관련한 인체 유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그래서 세제를 직접 만드는 데 쓰이는 천연재료 판매가 늘고 있으며, 아예 화학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는 노케미(No-chemi)족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노케미족은 공장에서 만든 탈취제, 방향제, 표백제 등을 피하고,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천연재료로 화학제품을 대체한다. 노케미족들은 천연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나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정도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강력한 화학물질을 대체하는 '천연'재료라 하면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 것 같지만, 의외로 저렴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천연제품을 만들 수 있다.

**베이킹소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자, 그 효능이 널리 알려진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천연 미네랄의 일종으로 주로 연마, 중화, 악취 제거, 찻잔의 물 때·냄비의 얼룩이나 찌든 때 제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부들 사이에서 만능이라 불리는 베이킹소다이지만 사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때가 물에 녹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녹지 않는다면 베이킹소다로 제거를 시도하면 된다. 베이킹소다가 때를 흡수해 깨끗하게 해주며, 많은 양을 사용해도 안전하다. 이 효과 천연재료는 생물체에서 발생한 때를 중화·분해시켜 때가 물에 잘 녹게 해 준다. 가정용 혹은 피부에 직접 닿는 용도로 사용하려면 베이킹소다 구입시 반드시 '식용'등급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자.

**식초** 베이킹소다로도 때가 제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어느 집이고 하나씩은 있는 식초를 사용하면 된다. 식초는 때를 무르게 만든 다음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해 준다. 물에 잘 풀어서 사용하면 땀 냄새나 오래된 때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초의 향이 역하게 느껴진다면 빈 용기에 식초와 라벤더, 장미, 페퍼민트 등 허브를 넣고 2주 정도 두자. 허브가 가라앉으면 거른 후, 물을 넣고 2~3배로 희석시키면 향기로운 천연 식초청소제가 완성된다. 식초를 사용할 경우, '염소계 세제'나 '표백제'와는 절대로 섞지 말아야 한다. 두 제품 간 화학작용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천연대리석으로 만든 벽이나 바닥, 타일에는 식초를 사용하면 망가질 위험이 있다.

**EM발효액** 'Effective + Micro-Organisms'의 줄임말로, 영문 뜻 그대로 유용한 미생물들을 이용한 발효액이다. 효모 유산균 및 광합성 세균이 주를 이루며, 흔히 쌀뜨물을 이용해서 만든다. EM발효액은 물과 함께 희석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주방이나 화장실 등의 물때 제거, 설거지, 악취 제거, 텃밭 가꾸기 등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머리를 감을 때에도 샴푸와 소량의 발효액을 섞으면 두피에 쌓인 피지나 땀 냄새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니 꼭 한 번 사용해보자.

## No-chemi



### tip

#### 엄마표 홈메이드 천연세제

##### 1. 파우더세제

베이킹소다 1컵 에센셜오일 10방울  
베이킹소다와 에센셜오일을 섞어 파우더세제로 활용해보자. 이 천연 파우더세제는 인공적인 향이 나게 하는 대신 냄새 물질을 중화, 분해해 무취 상태로 만든다. 이후 용기나 천, 종이봉투에 담아 냉장고나 신발 등에 넣어두면 훌륭한 탈취제가 된다. 3개월 정도 사용한 뒤 냄새를 흡수한 베이킹소다는 이후 청소에도 재사용할 수 있다.

##### 2. 섬유탈취제

소독용 에탄올 30ml, 라벤더 또는 티트리 등 에센셜오일 5~10방울, 물 180ml, 베이킹소다 1작은술  
에탄올과 베이킹소다로 만든 탈취제를 침구나 소파, 신발 등에 골고루 뿌린 후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면 냄새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탈취제를 만들 때에는 위의 재료를 순서대로 섞어야 쉽게 용해된다.

# 납득하기 어려운 과한 세금에 국민들은 읍니다!

## 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죠? 하지만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사례를 참고로 침착하게 대처해보세요.

정리·편집실 저문·권익위 공익법무관



### 사례



5년 전 목 좋은 상권에 가게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해 온 A씨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다. 재작년 인근 지역에 대형 쇼핑몰과 식당가가 들어서면서 가게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기 때문! '가게를 그만두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던 중 세무서에서 온 서류를 하나 받고 대경실색하고 말았다. 지난해 영업 실적이 부진했는데도 소득세로 자그마치 800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전문가의 조언

과세처분이 과도해 보일 경우 A씨는 당연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기에 앞서 A씨는 자신이 받은 서류가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세에 관해 보내는 서류로는 과세처분 전에 보내는 '과세예고통지서'와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통지 즉 '납세고지서'가 있습니다.

### A씨가 받은 서류가 과세예고통지서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가 구체적인 세목과 세액을 밝혀 '장차 과세를 할 예정이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금 산출이 적정한지에 대해 재차 판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세액 산출에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30일의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A씨가 받은 서류가 과세처분(납세고지서)인 경우

이미 과세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세무서나 관할 지방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66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2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9조). 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감사원법 제43조).

만약 위 기관들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A씨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으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은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과세처분에 따른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따른 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면, A씨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상 청구를 통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과세관청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A씨는 해당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도 재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쟁송절차 이전에 문제를 해결 방법은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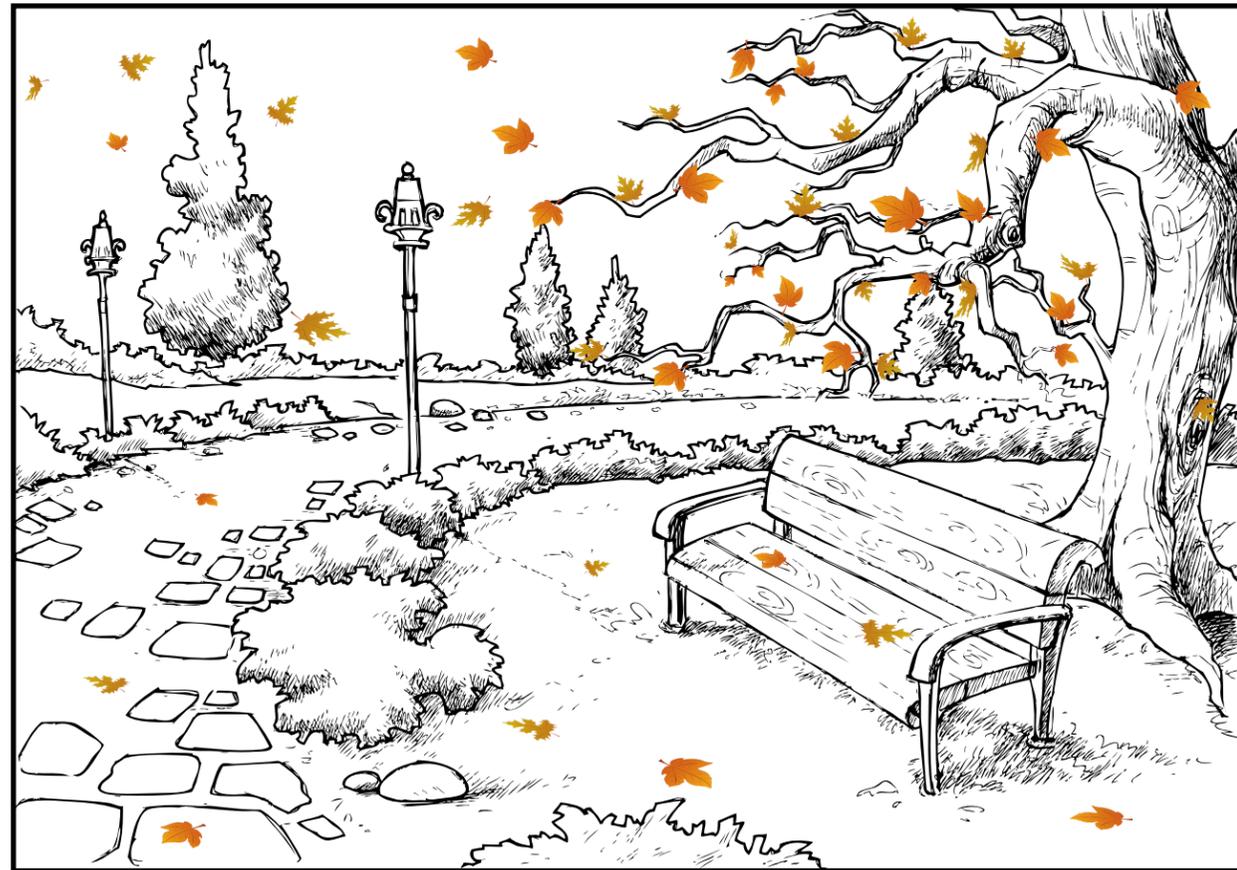
A씨가 소송 등 쟁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다면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면 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의 부과, 징수, 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조직으로 1999년 설치되어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위법성 등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나만의 가을 풍경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권익〉 독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아트테라피 공간. 다양한 컬러로 개성 있는 자신만의 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예쁘게 채색 후 모두에게 자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때 성함,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말아주세요!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보낼 곳: malee22@korea.kr



### <힐링 컬러링 당첨자>

김\*미<c\_soli\*\*\*\*@naver.com>  
 김\*미<orangepar\*\*\*\*@daum.net>  
 방\*희<lululov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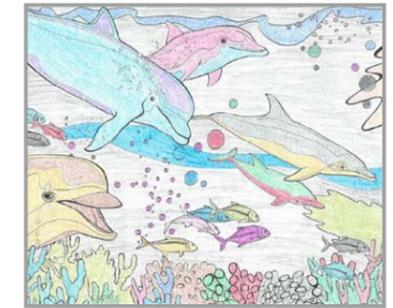
조\*희<dh1\*\*\*\*@naver.com>  
 이\*숙<dlwls\*\*\*\*@naver.com>  
 장\*경<qhru\*\*\*\*@empas.com>



김\*미



김\*미



방\*희



조\*희



이\*숙



장\*경

Healing  
Coloring



### NEWS 1

**성영훈 위원장, 멕시코 공공행정부 장관과 기관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장은 7월 1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비르 힐리오 안드라데 마르티네즈 (Virgilio Andeade Martinez) 멕시코 공공행정부 장관을 접견하여 위원회 반부패 교육 및 우수 제도 전수 등 양 기관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성영훈 위원장은 “권익위의 제도들을 멕시코 공직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권익위는 매년 운영 중인 외국인 청렴교육과정에 멕시코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 NEWS 2

**도로 확장을 둘러싼 대전광역시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정**  
 권익위는 7월 19일,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 체육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전광역시 공공사업을 정상 추진하면서도 인근 초등학교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체육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대전 동구 부구청장 및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NEWS 5

**전남 해남수협 시설 진출입로 개선 중재**  
 권익위는 8월 30일 전남 해남경찰서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국도와 연결된 전남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진출입로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남 해남경찰서 회의실에서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주민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해남경찰서장 등이 참석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해남수협의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 NEWS 6

**아랍 반부패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소개**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초청으로 튀니지 튀니스에서 9월 5일부터 7일까지(현지 시간) 개최되는 아랍 반부패·청렴 네트워크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6일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연설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NEWS 3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정부3.0 이동신문고’ 및 ‘고충청취 간담회’ 진행**  
 권익위는 8월 28일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하였다. 민원 상담과 함께 수원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출신 근로자 대표와의 ‘고충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이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와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현장해결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하였으며, 정부 정책 내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권고해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NEWS 4

**박경호 부위원장, ‘치악골 청렴 한마당’ 축사**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1일 강원 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치악골 청렴 한마당’에 참석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임직원 및 원주시민 등이 참여하여 성악, 사물놀이, 연극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우수작품을 시상,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박경호 부위원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강원에서 시작된 청렴의 바람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NEWS 7

**담양~광주 간 시외버스 노선변경 현장조정회의 개최**  
 권익위는 7월 20일 담양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담양~광주첨단지구 간 버스 노선 조정 등 2건의 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회의를 주재한 성영훈 위원장은 “오늘 조정은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수년간 해결되지 못한 담양 및 광주 첨단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NEWS 8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권익위가 주최한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이 8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개최됐다.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환영사를 통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했고, 내·외부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팀이 정해졌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원원 학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이 행정심판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Reader's Page 소통마당

## 독자의견

지난 호 <국민권익>을 읽고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은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의 애정어린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한: 11월 15일까지)

질병으로 인해 군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권익위의 도움으로 해결한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저의 일이 아니지만, 슬픔은 함께 하면 반으로 줄고, 즐거움은 배가 되듯이 마음 한 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옥란(충남 아산시)**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현장'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갔었는데, '국민생각함'을 권익위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란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권익위의 존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혜영(서울 마포구)**

'청렴한 사회를 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쟁점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청렴한 대한민국에 한 발 더 앞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영림(경남 창원시)**

국민권익 5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권익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구현에 노력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에 많은 관심과 성원 약속드립니다. **김휘곤(울산 북구)**

오랜 시간동안 함께 해온 <국민권익>이 벌써 50호를 맞이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100호, 200호까지 늘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권익위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조정선(전남 곡성군)**

## 독자퀴즈

<국민권익> 2016년 가을호 잘 보셨나요? 이번 호 내용과 관련한 독자퀴즈입니다.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 Quiz.

약칭 **IO**로도 불리는 ○○○○○○○○는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 간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1978년 창설됐으며, 지난 8월 10일부터 13일 까지 타타르스탄에서 아시아 지역회의가 개최되었다.

(힌트\_ p.30 ACRC 리포트)

지난 호 정답	지난호 정답자
인도네시아	김성진(경남 창원시) / 장효진(충북 청주시) 박정선(경남 창원시) / 이현덕(경기 용인시) 장훈(전북 정읍시)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권익위를 잘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각각 다섯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공익신고

##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 보호**
  - 신분 비밀보장, 신분보호, 각종 불이익조치 금지
  - 형벌·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 홈페이지(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대상 : 5대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b>건강</b>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b>안전</b>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등	<b>환경</b>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b>소비자 이익</b>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등	<b>공정 경쟁</b>  기업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등
---	-----------------------------------	--	--	--

